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A, ACF-RA, ACH, ACH-RA, COA, COA-RA, COC-RA, COE-RA, COF-RA, COG-RA, EBA-RA, EBJ-RA, EBK-RA, ECC-RA, EEA-RA, EKA-RA, GKA-RA, IGN, IGO-RA, JGA-RA, JGB-RA, JHC, JHC-RA, JHF-RA, JHG-RA, JPD, JPD-RB, 협상된 계약
책임 기관:	Deputy Superintendent; Chief Operating Officer; Chief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 Chief of District Operations; Chief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Chief of Strategic Initiatives

사고 신고/보고 Incident Reporting

I. 목적

보건, 안전, 보안 사고에 대한 보고 지침을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being(OSSWB),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OHRD), Systemwide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DSSEM), 기타 MCPS 사무실, 법 집행기관 및 기타 외부 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Synergy 또는 기타 확립된 보고 프로토콜을 통해 시스템 대응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이러한 사건을 대중에게 보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II. 정의

- A. *MCPS 소유지(MCPS property)*란 MCPS 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부지, MCPS 버스, 기타 MCPS 차량, 시설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고 MCPS 가 지원하는 활동 시설 및/또는 부지 등을 포함한 모든 학교 또는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 B. *학교장/디렉터(principal/director)*이란 학교나 사무실의 책임을 맡은 행정 담당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C. A 보고 가능한 사고(*reportable incident*)는 다음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1. MCPS 소유지에서 발생한,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MCPS 직원에게 보고된 경우, 그리고
2. 일정 수준의 위험을 포함하거나,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피해 또는 피해 위험이 있거나, 또는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또는
3. 직원이나 학생을 염려하게 하고 커뮤니티의 문제 또는 경찰이나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을 경우.

III. 사고 대처 절차

A. 즉각적인 사고 대처

학교 당일 또는 전후에 발생하는 사건을 포함하여, 신고 가능한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근무지의 직원은 기존의 학교/근무지 위기 계획에 따라 긴급 상황을 해결하고 즉시 학교장/디렉터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직원은 다음에 따라 적절한 후속 연락처를 결정합니다:
 - a) 911 비상 대응 요청이 접수되면, 학교장/디렉터 또는 대리인은 교육청 중앙 사무실 배포 목록을 통해 의사소통을 조율할 Department of Systemwide Safety and Security (DSSEM)에 연락합니다.
 - b) 911 비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는 즉시, 또는 긴급 상황에 따라 1 시간 이내에 OSSWB 에 보고해야 하며, OSSWB 는 교육구 전체 사고 지휘팀(Districtwide Incident Command Team)을 가동할 필요성을 평가하고 교육구 중앙 사무실 배포 목록을 통해 의사소통을 조율할 것입니다.
 - c) 학교 비상 계획은 양식 236-2, *학교 비상 계획(School Emergency Plan)*에 DSSEM 또는 OSSWB 에 전화할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2. 학교 시간 전후에 사고가 발생하여(예:주말에 학교에 침입 또는 기물 파손) DSSEM 과/또는 학교장에게 보고된 경우, DSSEM 직원과 학교장은 모두 즉시 OSSWB 에 연락해야 합니다.

3. 비상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직접 관련된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a) 학교 공동체 및 더 많은 대중에게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 섹션 V 를 참조합니다.
 - b) MCPS Regulation JHC-RA, *아동 학대 및 방치 보고 및 조사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에서 아동 학대 및 방치로 의심되는 사건은 학교장/대리인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누가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B. 커뮤니티 참여 책임자와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garding Community Engagement Officers-MOU-CEO)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은 DSSEM 뿐만 아니라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1. 해당 법 집행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대응 및 조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a) 사망(자살 또는 자살 시도 포함; 자살 위험에 대한 내용은 MCPS 양식 335-54, *자살 위험 보고 양식(Suicide Risk Reporting Form)* 참조).
 - b) 강간 및/또는 합의되지 않은 성적 행위 또는 접촉(아동 학대 및/또는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MCPS Regulation JHC-RA, *아동학대 및 방치 보고와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참조)
 - c) 강도/강도 미수(가해자의 무장/비무장 여부에 관계없이 무력,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 d) 증오 범죄(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노숙 또는 장애를 이유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의 재산을 훼손하는 등의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¹ 전체 제목: 법 집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고 프로토콜은 2022년 4월 4일 *학교 기반 사건에 대한 Community Engagement Officer Program 및 기타 법 집행 대응에 관한 Montgomery 카운티 경찰서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및 기타 기관 간의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e) 총기를 소지하거나, 고의로 학교 소유지 안으로 가져오거나 휘두르거나, 발사체를 발사하여 해를 입히도록 설계 또는 조작된 장치를 포함한, 기타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를 고의로 휘두르거나 사용하는 경우(MCPS Regulation COE-RA, *Weapons* 참조)
 - f) 갱 관련 사건/범죄(MCPS Regulation JHG-RA, *갱, 갱단 활동 또는 기타 유사한 파괴적 또는 불법 집단 행동 예방(Gangs, Gang Activity, or Other Similar Destructive or Illegal Group Behavior Prevention)* 참조)
2. 학교장/디렉터/대리인, DSSEM, CEO, 또는 기타 법 집행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 집행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대응과 조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a) 방화(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화재를 일으킴) 또는 구두 또는 서면 방화의 위협.
 - b) 폭발성, 방화성 또는 독성 물질을 운반 또는 폭발 장치와 결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조한 파괴장치의 제조 또는 소유 (MCPS Regulation EKA-RA, *비상사태 및 재해 대비(Emergency and Disaster Preparedness)* 참조)
 - c) 파괴 장치의 위치 또는 폭발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 신고.
 - d) 규제 대상인 위험 물질의 유통 또는 제조.
 - e) 학교 보건실 외부에서 의료 조치가 필요한,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으로 911 에 연락한 경우. (아동 학대 및/또는 방치로 의심되는 경우, MCPS Regulation JHC-RA, *아동 학대 및 방치신고 및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참조)
 - f) 절도 (동일 가해자의 단일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도난당한 재산의 가치가 1,500 달러 이상인 경우)
 - g) 고의로 휘두르거나 해를 가할 목적이 아닌, 잠재적으로 위험

또는 치명적인 무기를 학교 소유지에서 소지하는 경우.²

- h) 규제된 위험 약물의 소지 및/또는 배포할 의도로 소지하는 경우(교육구 정책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에서의 술,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예방(*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과 MCPS Regulation IGO-RA, *학생이 관련된 술, 담배, 기타 약물 남용 사건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volving Students)* 참조)

- (1) 법 집행 기관의 조사 주도 여부와 상관없이, MCPS 직원은 규제 물질로 의심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사법 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 (2) 그러나 약물 상담이나 정보 요청 회의에서 학생으로부터 규제 물질로 의심되는 것을 얻은 경우 Mayr 법률에 따라 MCPS 직원은 학생 신원을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MCPS Regulation IGO-RA, *학생에 관련된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약물 남용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volving Students)* 참조)

C.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법 집행 기관과 MCPS 는 학교 기반 사건을 처리할 때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기존의 학교 자원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MOU-CEO 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황의 경우, 학교는 경찰에 연락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학교 자원과 서비스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D. 긴급 지원 또는 법 집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음 요청은, 사건에 대한 모든 사실이 아직 수집되지 않은 경우라도 1 시간 이내에 DSSEM 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사안에 따라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외부 기관에 추가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안 사고

- a) 화재 및 구조 지원 요청

²버터 나이프는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See *In re Melanie H.*, 120 Md.App.158 (1999) 참조

(MCPS Regulation EBA-RA, *화재 안전 (Fire Safety)* 참조)

- b) 폐쇄, 대피 또는 피난처 (MCPS Regulation EKA-RA, *긴급 재해 대비책(Emergency and Disaster Preparedness)* 참조)
- c) 유해 물질 사고 (MCPS Regulation EKA-RA, *비상사태 대비책(Emergency and Disaster Preparedness)* 참조)
- d) MCPS 재산에 대한 물리적 또는 서류상 철폐.

2. 응급 의료

- a) 응급 의료 지원 요청 (MCPS Regulation EBJ-RA, *학교에서의 응급 처치 및 응급약 처치(Emergency Care and First Aid in Schools)* 참조).
- b) 상당한 사망 위험, 극심한 신체적 고통, 장기간 또는 명백한 기형을 수반하는 부상으로 정의되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는 모든 사건; 또는 신체 구성원, 기관 또는 정신 기능의 장기적인 손실 또는 손상을 수반하는 모든 부상으로 정의하는,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하는 모든 사고.
- c) 주 또는 연방보고 요건을 갖춘 모든 응급 의료 사건(예: 과민증(Anaphylaxis)과 연관된 epinephrine 의 투여, 오피오이드 과다복용과 관련된 naloxone 투여, 혈액 매개 병원체 사고 또는 자동 외부 제세동기의 사용) (MCPS Regulation JPD-RB, *과민증을 경험한 학생들을 위한 응급 처치(Emergency Care for Students Experiencing Anaphylaxis)* 및 교육구 정책 IG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의 술, 담배 및 기타 약물 남용 방지 (Prevent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참조)를 말합니다.

E. 다음과 같은 사건은 사건에 관한 모든 사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1 시간 이내에 OSSWB 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응급 서비스가 요청된 경우 DSSEM 에 직접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1. 학생 및/또는 학생 소지품에 대한 수색과 압류 (MCPS Regulation JGB-RA, *수색 및 압류. (Search and Seizure)* 참조)

2. 섹션 IV.B.7 에 명시된 대로 학교 보안 직원(SSE)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학교 보안 직원(SSE)과 학생 간에 발생한, 신고 가능한 무력 사용.
3. 다음과 같은 건강 관련 사고:
 - a) 전염성 질병(예: 백일해 또는 결핵)이 확인된 경우
 - b) MCPS Regulation EBH-RA 에 명시된 보고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타 사고, *학생 사고 신고(Reporting Student Accidents)*:
 - (1) 머리, 눈, 목 또는 척추에 부상을 입은 경우.
 - (2) 뼈 또는 관절 부상으로 부종이 생긴 경우.
 - (3) 봉합이 필요해 보이는 자상(찢린 상처), 화상 또는 열상(혈관 파열).
 - (4) 의약품, 화학 물질 또는 이물질의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섭취 및 규제 물질의 섭취.
 - (5) 모든 동물성 물림(MCPS Regulation EBK-RA, *동물에 의해 물린 것에 대한 보고 및 돌보기 (Reporting and Caring for an Animal Bite)* 참조)
4. 재산상의 손해/오작동:
 - a) 필수 장비, 시설 및/또는 서비스의 실질적 또는 중대한 오작동, 또는
 - b)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 (MCPS Regulation ECC-RA, *MCPS 재산 손실 및 손상(Loss of or Damage to MCPS Property)* 참조)
5. 행동 개입:

계획된 학교 수업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심각한 중단을 초래하는 부당 행위.

IV. Synergy 및 기타 보고 프로토콜

- A.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 수업 동안, 혹은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OSSWB 에 보고되고 사고 관리에 대해 간소화된 "원스톱" 접근 방식을 촉진하기 위해 Synergy 를 통하여 적절히 문서화 및 배포됩니다.
 - 1. 학교장/디렉터/대리인 또는 DSSEM 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OSSWB 는 Synergy 에서 보고를 시작하고 Synergy 를 사용하여 다른 사무실에 연락해 위험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사무실 간의 시스템 대응을 소통, 관리 및 조정합니다. (Office of Communications; DSSEM (DSSEM 에서 연락이 오지 않은 경우); Office of Well-being, Learning and Achievement;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OGC),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DCI).
 - 2. 학교장/디렉터/대리인은 Synergy 기록에 사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48 시간 이내),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사건 보고서를 마감합니다.

- B. 다음 사건은 주 또는 연방 요구 사항, MOU-CEO 및/ 또는 기타 MCPS 규정에 명시된 보고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일부는 OSSWB 을 대신해, 또는 추가적으로, MCPS 사무실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1. 아동 학대 및 방치는 Montgomery County Child Protective Services 및/ 또는 Adult Protective Services 에 보고해야 합니다. (MCPS Regulation JHC-RA 아동 학대 및 방치 보고 및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에 따라 정의)
 - 2. 버스 운전자는 버스 사고를 MCPS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에 직접 보고합니다. 사고 현장 책임, 통보 및 보고 요구 사항은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에 따르며 MCPS Regulation EEA-RA, 학생 운송(Student Transportation)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버스 사고 또는 기타 기내 사고가 났을 때 부모/보호자와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 학교는 DOT 로부터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즉시 OSSWB 에 연락해야 합니다.
 - 3. 직원이 학생의 성희롱을 포함한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 신고를 받게 되면, 해당 정보는 즉시 학교장/대리인에게 보고되며, MCPS Form 230-35, 괴롭힘, 희롱 또는 협박 신고

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을 통해 서면으로 기록되고 다음과 같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 a) 성희롱이 아닌 학생의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Intimidation*)는 MCPS Regulation, JHF-RA, *학생의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Student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에 책정된 바에 따라 교장이 기록 및 조사합니다.
 - (1) 사건은 Synergy 에 기록됩니다.
 - (2) sections III.B 및/또는 III.C.에 책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아닌 이상 OSSWB 에 연락하거나 Synergy 에 사건을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는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지침을 위해 OSSWB 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b) 학생의 성적 비행과 성희롱은 교육구 정책 ACF, *학생의 성적 비행과 성희롱(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에 정의되어 있으며, MCPS Regulation JHF-RA, *학생의 괴롭힘, 희롱, 협박(Student Bullying, Harassment, and Intimidation)* 과 MCPS 규정 ACF-RA, *Title IX 의 조사(Investigation of Title IX) MCPS 학생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of MCPS Students)*.에 명시된 보고와 조사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부 형태의 성희롱은 형사처벌 또는 아동학대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 집행 기관의 조사 또는 MCPS Regulation JHC-RA, *아동 학대 및 방치 신고 및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및/또는 양해각서(MOU-CEO)의 조건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 (1) 의무보고 요구사항을 모두 마친 후, 학교장/대리인은 OSSWB 에 전화합니다. 이 통화는 Synergy 를 통해 학생 복지 및 규정준수 부서(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Unit)에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배포됩니다. OSSWB 와 협력하여, 학생복지 및 규정준수 부서(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Unit)는 보고된 학생의 성희롱사건에 대한 MCPS 의 대응을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법 집행 기관이 사건에 개입된 경우, 학생복지 및

규정준수 부서(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Unit)와 상의하여 법 집행기관과 MCPS 의 대응을 조율해야 합니다. 학생복지 및 규정준수 부서(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Unit)는 법 집행기관과 적절한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DSSEM 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이 사건은 교육구 정책 ACF, *학생의 성적 비행과 성희롱(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MCPS Regulation JHF-RA, *학생 따돌림, 괴롭힘 또는 협박(Student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또는 MCPS 규정 ACF-RA, *MCPS 학생의 Title IX 성희롱 조사(Investigation of Title IX Sexual Harassment of MCPS Students)* 에 명시된 대로 학교장/대리인이 문서화하고 Synergy 에 기록합니다.

- 4. 구금 또는 격리 사고(MCPS Regulation JGA-RA, *교실 관리 및 학생 행동 중재(Classroom Management and 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 참조) 사건은 특수 교육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에 보고되고 Synergy 에 기록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24 시간 이내에 통보받아야 합니다.
 - a) 추가로, 학교 수업이 마치기 전까지 학부모/후견인에게 연락이 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b) 공립학교 환경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격리조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5.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상 상해와 관련된 신고 및 청구는 MCPS 에 대한 근로자 보상 청구를 관리하는 제 3 기관인 CorVel Corporation 에 직접 보고됩니다.

- 6. 직장 내 교직원 괴롭힘 및 기타 교직원 관련 혐의, 불만 또는 고충은 MCPS Regulation ACA-RA, *비차별, 형평성,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보고합니다. MCPS Regulation ACH-RA, *직장 내 괴롭힘(Workplace Bullying)*; MCPS Regulation GKA-RA, *행정 불만(Administrative Complaint)* 또는 협상된 합의서.

- 7. MCPS 는 학교안전요원(SSE)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SSE 와 학생

사이에 발생한, 또한 보고할 수 있는, 무력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Maryland Center for School Safety(MCSS)에 보고해야 합니다.

- a) 학교는 SSE가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무력을 사용하는 모든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는 즉시 OSSWB와 DCI 모두에게 구두로 보고해야 하며, OSSWB는 이를 바탕으로 Synergy에 사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OSSWB는 DSSEM에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 (1) 펼친 손으로 학생 밀치기.
 - (2) 고의적으로, 또한 강제로 학생을 바닥에 쓰러뜨리는 행위.
 - (3) 초크홀드, 또는 기타 강하게 팔로 누르는 행위.
 - (4) 옆드린 자세 등 호흡 및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자세, 또는 머리, 목, 또는 몸통에 압력을 가하는 자세로 학생을 두는 행위.
 - (5) 손, 무릎, 발, 또는 기타 물체로 학생을 가격하는 행위.
- b) DCI는 OSSWB 및 DSSEM과 협력하여 취해진 조치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c)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는 사용 가능한 동영상 검토, 인터뷰 실시, 적절한 기록 검토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d) 무력을 사용한 목적은 사건의 사실로 포함됩니다.
 - (1) Maryland주법에 따라 학교장, 교사, SSE 또는 기타 학교 시스템 직원은 학교 구내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여행에서 폭력을 완화 및/또는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싸움의 주체가 학생이든 다른 개인이든 관계없이, 학생 또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싸움이나 신체적 다툼에 개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2) 개입의 정도와 강도는 폭력을 방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며 싸움에 가담한 개인 및 주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만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3) Maryland 주 법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i) 적절하게 시행된 제재는 MCPS Regulation JGA-RA, *교실 관리와 학생 행동 중재(Classroom Management and Student Behavior Interventions)*에 명시된 대로만 시행합니다.
 - (ii) 학생을 진정시키거나 안심시키기 위해 학생을 잠시 붙잡는 것.
 - (iii) 물리적 인술: 학생이 안전한 장소로 걸어가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손, 손목, 팔을 일시적으로 만지거나, 또는 잡거나 손, 손목, 팔, 어깨 또는 등을 붙잡는 행위 (즉, 물리적 인술은 장기간의 행동이 아니며 학생의 자유로운 이동 능력을 제한하지 않음).
 - (iv) 카운슬링과 같은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은 경우,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하며 방해가 되는 학생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경우.
 - (v) 학생을 떼어놓기 위해 싸움에 개입하는 경우.
- e) DCI 조사 결과 해당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았거나 더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DCI 는 MCSS 의 보고 절차에 따라 해당 조치를 MCSS 에 보고합니다.
- C. 학교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일반적인 재산 피해 사건의 경우 OSSWB 에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기물 파손 제외), 5 일 이내에 학교가 Synergy 에 기록해야 합니다. 기물 파손은 발견 후 1 시간 이내에 DSSEM 및 OSSWB 에 보고되어야 하며 Synergy 에 기록해야 합니다.
- D. OSSWB 는 학년도 내내 정기적으로, 다른 사무실과 협력하여, 정확한 보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건 보고서가 완료 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V. 의사 소통

OSSWB 는 해당 학교 및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DSSEM, DCI, OGC 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무실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협력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및 커뮤니티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을 할당합니다.

- A. 가능한 빨리, 학교장/디렉터, OSSWB 및 협력 사무실은 -
1.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리더(학교장/디렉터가 될 수 있음)를 결정하고,
 2. 중요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고,
 3. 법 집행 기관이나 기타 기관이 진행중인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절차를 결정하고, 직원 협회 및 해당 양해 각서와의 협상된 계약을 준수하는 등, 관련된 사람의 기밀성, 개인정보 보호 및 적법 절차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B. 법 집행 기관이 사건에 개입된 경우, DCI 및 OGC 와 협력하여 OSSWB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 C. 아동 학대 및 방치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의사 소통은 MCPS Regulation JHC-RA, *아동 학대 및 방치 보고 및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그리고 MOU-CEO 에 부합해야 합니다.
- D. 학부모/보호자, 직원, 학생 및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E. 사고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공개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사건 및 조치에 대한 설명
 2. 학부모/보호자 및 직속 감독자 또는 다른 사람들(적절할 경우)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활동에 대한 설명
- F. 대중에게 전달되는 사본은 OSSWB 파일에 보관되며 Synergy 에 명시됩니다.

관련 출처: Maryland 주 주석법, 교육조항, §7-307(a) 그리고 §7 1508; 메릴랜드 법령 규정 §13a.08.01.12 and §13A.08.04.02.B(11)(b); 그리고 Maryland 주 교육부(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aryland 주 징계 규정을 위한 지침. (Maryland Guidelines for a State Code of Discipline)* (2014)

규정 변경사: 이전 규정 번호 285-9, 1976년 11월 19일, 1992년 1월 31일 개정, 1996년 11월 4일 개정, 1998년 7월 20일 개정, 1999년 9월 24일 개정, 2000년 6월 1일 개정, 2006년 2월 28일 개정, 2013년 10월 18일 개정, 2014년 9월 5일 개정, 2018년 9월 5일 개정, 2018년 12월 17일 개정, 2021년 8월 31일 개정, 2023년 2월 1일 개정.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을 창출,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로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Academic Officer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850 Hungerford Drive, Room 208, Rockville, MD 20850 240-740-3230 RACU@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